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6542 판결
판 결 선 고 2006. 9.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해 갖고 있던 4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2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범무사인 피고에게 소장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위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장을 작성하면서 소외 1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잘못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원고는 변론기일소환장이나 소송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며(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된 끝에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에 대한 판결정본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원고는 뒤늦게 판결선고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는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적절한 공격과 방어를 할 권리 내지 기대를 현저하게 상실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4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청구액 4천만 중에는 재판받을 기회의 상실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나(기록 336쪽), 구체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로 각각 얼마씩을 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석명을 통해 원고의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간과하였거나 필요한 석명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우선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에 대한 답변서 및 소송안내서 등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탓에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2002. 1. 19. 법원에서 위 양수금 청구사건의 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2002. 2. 6.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법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공격·방어를 하였던 만큼,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송기록을 열람한 원고로서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대법관 김능환 _____